

투자권유준칙

제 1 장 총칙

제 1 조(목적)

이 투자권유준칙(이하 “준칙” 이라 한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50조 제1항에 따라 노아파트너스 주식회사(이하 “회사” 라 한다)의 임직원과 투자권유대행인(이하 “임직원등” 이라 한다)이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절차 및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용어의 정의)

이 준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이 준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법, 법 시행령, 법 시행규칙,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규정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규정 등(이하 “관계법령 등” 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투자권유”란 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투자자문계약·투자일임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 “전문투자자”란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성 구비 여부,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로서 법 제9조 제5항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 “일반투자자”란 전문투자자가 아닌 투자자를 말한다. 다만 전문투자자 중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 호 이외의 자가 일반투자자와 동일한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당사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당사가 이에 동의한 경우에는 일반투자자로 본다.
- “포트폴리오투자”란 투자위험 분산을 목적으로 둘 이상의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 “파생상품등”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
 - 파생상품
 - 법시행령 제52조의2 제1항 각 호의 금융투자상품

제 3 조(투자권유 및 판매 일반 원칙)

임직원등은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 및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임직원등은 관계법령 등을 준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합리적인 투자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투자에 따르는 위험 및 거래의 특성과 주요내용을 명확히 설명하여야 한다.
- 임직원등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스스로 투자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여야 하고, 그에 대한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투자자에게 알려야 한다.
- 임직원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가 이익을 얻거나 회사 또는 제삼자가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2 장 투자자 구분 등

제 4 조 (방문 목적 확인)

1. 임직원등은 투자자 방문시 투자자의 방문 목적 및 투자권유 희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임직원등은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투자권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투자자가 원하는 객관적인 정보만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 5 조 (일반, 전문투자자의 구분)

1.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해당 투자자가 일반투자자인지 전문투자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임직원등은 법 제9조제5항 단서에 따라 일반투자자로 전환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가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한다.
3. 주권상장법인이 회사와 장외과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투자자로 본다. 단, 해당 법인이 전문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회사에게 서면으로 전달하는 경우에는 전문투자자로 본다

제 3 장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대한 판매**제 6 조 (투자권유를 받지 않는 투자자에 대한 보호의무)**

1.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투자권유를 할 수 없음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법 제46조제2항(투자자정보 파악) 및 제3항(적합성원칙)에 따른 의무를 회사가 부담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는 의사를 투자자로부터 서면 또는 전자통신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2.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투자권유를 받지 않고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라도 원금손실 가능성, 투자에 따른 손익은 모두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등 투자에 수반되는 주요 유의사항을 알려야 한다.

제 7 조 (과생상품등에 대한 특칙(적정성원칙))

1. 임직원은 투자자에게 과생상품등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그 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이하 “투자자정보” 라 한다)를 파악 하여야 한다.
2. 임직원은 제1항에 따라 파악한 투자자정보에 비추어 해당 과생상품등이 그 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아니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과생상품등의 내용, 해당 투자에 따르는 위험 및 해당 투자가 투자자정보에 비추어 적정하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투자자에게 알리고 투자자로부터 서명(「전자서명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명날인, 녹취, 전자우편, 전자우편과 유사 한 전자통신, 우편 또는 전화자동응답시스템(이하 “서명등” 이라한다)의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적정성 판단의 기준은 제10조 및 제11조의 적합성판단을 위한 기준에 따른다.

제 4 장 투자권유 희망 투자자에 대한 판매

제 1 절 투자자정보

제 8 조 (투자자정보 파악 및 투자자성향 분석 등)

1. 임직원등은 투자권유를 희망하는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투자자의 투자자정보를 투자자정보 확인서에 따라 파악하고, 투자자로부터 서명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임직원등은 제1항에 따라 확인한 투자자정보의 내용 및 [별지1호]에 따라 분류된 투자자의 성향(이하 “투자자성향”이라 한다)을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3. 임직원등은 원칙적으로 투자자 본인으로부터 투자자정보를 파악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대리인이 그 자신과 투자자의 실명확인증표 및 위임장 등 대리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지참하는 경우 대리인으로부터 투자자 본인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위임의 범위에 투자자 정보 작성 권한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임직원등은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일반투자자로서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 하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그 거부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 받아야 한다.
5. 임직원등은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로 간주하고 “제3장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대한 판매” 절차를 따른다

제 9 조 (투자자정보의 유효기간)

1. 임직원등은 투자자로부터 별도의 변경 요청이 없으면 투자자정보를 파악한 날로부터 24개월(투자자정보 유효기간) 동안 투자자정보가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2.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제1항을 설명하고 투자자정보가 변경되면 회사에 변경 내용을 통지하도록 알린 후 투자자로부터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임직원등은 회사가 이미 투자자정보를 알고 있는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자 정보 유효기간 경과 여부를 확인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투자자정보를 다시 파악하여야 한다.
4. 제1항부터 제3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일임계약이 체결된 투자자의 경우에는 매 분기 1회 이상 투자자의 재무상태 및 투자목적 등의 변경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 2 절 투자권유

제 10 조 (투자권유 절차)

1. 임직원 등은 회사가 정한 [별지1호]의 적합성 판단 기준에 비추어 보아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임직원 등은 회사가 이미 투자자정보를 알고 있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기존 투자자성향을 알리고 투자권유를 하여야 한다.
3. 임직원 등은 투자자가 보유 자산에 대한 위험회피 목적으로 투자하거나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등 해당 투자를 통하여 투자에 수반되는 위험을 낮추거나 회피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지4 호]의 금융투자상품 위험도 분류 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투자권유를 할 수 있다.
4. 임직원 등은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는 금융투자상품에 투자자가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투자가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 및 해당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의 위험성을 알리고 해당 투자자로부터 서명 등의 방법으로 이를 고지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 받아야 한다.

제 11 조 (장외파생상품 이외의 파생상품등에 대한 투자권유 특칙)

임직원은 개인인 투자자에게 장외파생상품 이외의 파생상품등에 대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제10조 1항에 따른 [별지1호] 기준과 함께 투자자의 연령과 파생상품 등에 대한 투자경험 등을 추가로 고려한 [별지6호]의 기준에 따라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2 조 (투자권유시 유의사항)

1. 임직원 등은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가. 거짓을 알리는 행위
 - 나.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 다. 투자자로부터 투자 권유의 요청을 받지 아니하고 방문·전화 등 실시간 대화의 방법을 이용하는 행위. 다만, 증권과 장내파생상품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라.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권유를 계속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각 행위는 제외한다.
 - ① 투자성 있는 보험계약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 ②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후 1개월이 지난 후에 다시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 ③ 다른 종류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이 경우 다음의 각 금융투자상품 및 계약의 종류별로 서로 다른 종류의 금융 투자상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 (ㄱ) 금융투자상품: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 (ㄴ)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 i. 증권에 대한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 ii.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 iii.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 (ㄷ) 신탁계약
 - i. 법 제103조제1항제1호의 신탁재산에 대한 신탁계약
 - ii. 법 제103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신탁재산에 대한 신탁계약
- 마. 투자자(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를 받아 투자를 한 경험이 있는 일반투자자는 제외한다)로부터 금전의 대여나 그 중개·주선 또는 대리를 요청 받지 아니하고 이를 조건으로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 바. 관계법령 등 및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금전·물품·편익 등 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 2. 임직원 등은 투자자의 투자자성향 및 금융투자상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기투자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투자자에게 해당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장기투자를 권유할 수 있다.
- 3. 임직원 등은 투자자의 투자자산이 특정 종목의 금융투자상품에만 편중되지 아니 하도록 분산하여투자할 것을 권유할 수 있다.

제 3 절 설명의무

제 13 조 (설명 의무)

1. 임직원 등은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성에 관한 구조와 성격,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조건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계약의 해제, 해지에 관한 사항 등(이하 “투자설명사항”이라 한다)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설명한 내용을 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2. 임직원 등은 제1항에 따라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투자자의 투자경험과 금융투자상품에 대한지식수준 등 투자자의 이해수준을 고려하여 설명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3. 임직원 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주요 손익구조 및 손실위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를 계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임직원 등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항에 따른 설명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투자자에게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가. 투자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설명서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 나.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의 경우 법 제123조에 따른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투자자가 투자설명서 교부를 별도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말한다)를 판매 전에 교부하는 경우
5. 임직원 등은 제1항에 따른 설명을 함에 있어서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임직원 등은 투자자가 추후에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문의할 수 있도록 자신의 성명, 직책, 연락처 등의 이용방법을 알려야 한다.

제 5 장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 분류

제 14 조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 분류 등)

1. 회사는 다음 각호의 요소들을 감안하여 각 금융투자상품별 위험도를 [별지4]와 같이 분류하며,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위험도 분류는 다른 금융투자상품과 별도로 기준을 정한다.
 - 가. 정량적 요소 : 과거 가격의 변동성, 원금손실가능범위, 기초자산의 종류 및 구성 비중, 신용등급, 만기, 레버리지 정도 및 금융투자상품의 목표 투자기간 등
 - 나. 정성적 요소 : 상품구조의 복잡성, 거래상대방위험, 조기상환가능성 및 유동성 등
2.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를 분류하는 경우 장내파생상품은 다른 금융투자상품(장외파생상품을 제외한다)보다 높은 위험도로 분류한다.
3. 회사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위험도 분류를 하는 경우 외부기관이 작성한 위험도 평가기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4. 임직원등은 포트폴리오투자의 경우, 이를 구성하는 개별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를 투자금액 비중으로 가중 평균한 포트폴리오 위험도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포트폴리오의 구성, 운용전략 및 위험도 측정 등을 회사의 전문조직에서 결정하는 경우 이에 따르도록 한다

제 6 장 그 밖의 투자권유 유의사항

제 15 조 (계약서류의 교부 및 계약의 해제)

1. 임직원은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서류를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내용 등을 고려하여 투자자보호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서류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가. 매매거래계좌를 설정하는 등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하기 위한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계속적·반복적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
 - 나. 투자자가 계약서류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 다. 투자자가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계약서류를 받을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로서 투자자의 의사에 따라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계약서류를 제공하는 경우
2. 임직원은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에게 제1항에 따른 계약서류를 교부받은 날부터 7영업일 이내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 16 조 (손실보전 등의 금지)

임직원등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2. 투자자가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
3.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4.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

제 17 조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에 대한 특칙)

1. 임직원등은 투자자와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자료를 미리 투자자에게 제공하고 확인받아야 한다.
 - 가. 투자자문의 범위 및 제공방법 또는 투자일임의 범위 및 투자대상 금융투자상품
 - 나.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의 수행에 관하여 회사가 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기준 및 절차
 - 다.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실제로 수행하는 임직원의 성명 및 주요경력
 - 라. 투자자와의 이해상충방지를 위하여 회사가 정한 기준 및 절차
 - 마.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과 관련하여 투자결과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및 투자자가 부담하는 책임에 관한 사항
 - 바. 수수료에 관한 사항
 - 사. 투자실적의 평가 및 투자결과를 투자자에게 통보하는 방법(투자일임계약의 경우에 한한다)
 - 아. 임원 및 대주주에 관한 사항
 - 자. 투자일임계약인 경우에는 투자자가 계약개시 시점에서 소유할 투자일임재산의 형태와 계약종료 시점에서 소유하게 되는 투자일임재산의 형태
 - 차.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할 때 적용되는 투자방법에 관한 사항
 - 카.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투자일임보고서의 작성대상 기간
 - 타. 그 밖에 금융투자업규정 제4-73조 각 호의 사항
2. 임직원등은 투자자와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투자자에게 교부하는 계약서류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재내용은 제1항에 따라 교부한 서면자료에 기재된 내용과 달라서는 아니 된다.
 - 가. 제1항 각호의 사항
 - 나. 계약당사자에 관한 사항
 - 다. 계약기간 및 계약일자
 - 라. 계약변경 및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 마. 투자일임재산이 예탁된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그 밖의 금융기관의 명칭 및 영업소명

제 18 조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의 금지행위)

임직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및 제2의 경우에는 회사가 다른 금융투자업, 그 밖의 금융업을 겸영하는 경우로서 그 겸영과 관련된 해당 법령에서 제1호 및 제2호의 행위를 금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1. 투자자로부터 금전, 증권 그 밖의 재산의 보관·예탁을 받는 행위
2. 투자자에게 금전, 증권 그 밖의 재산을 대여하거나 투자자에 대한 제3자의 금전, 증권 그 밖의 대여를 중개·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
3. 계약으로 정한 수수료 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규정은 금융위원회의 투자일임업 등록일부터 효력이 있다.

[별지 1]

[일반투자자 투자정보확인서]

다음 설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고객의 투자정보 및 투자성향과 자산관리 여건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그에 적합한 투자권유 및 계약자산의 운용 방향을 수립하게 되므로 신중하고 정확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설문지에서 수집된 개인 정보는 투자권유를 하기 위한 근거자료로만 사용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기존정보 변경여부>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type="checkbox"/> 기존 정보와 동일	<input type="checkbox"/> 정보변경
-----------------------------	------------------------------------	-------------------------------

※ 투자자정보확인 Part1 기초정보(개인고객용)

대분류	질문
재산상황	1. 월소득 현황 <input type="checkbox"/> 300만원 이하 <input type="checkbox"/> 500만원 이하 <input type="checkbox"/> 700만원 이하 <input type="checkbox"/> 1,000만원 이하 <input type="checkbox"/> 1,000만원 초과 2. 향후 자신의 수익원에 대한 예상 <input type="checkbox"/> 현재 일정한 수익이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 <input type="checkbox"/> 현재 일정한 수익이 발생하고 있으나, 향후 감소하거나 불안정할 것으로 예상 <input type="checkbox"/> 현재 일정한 수익이 없으며, 연금이 주 수익원임 3. 총 자산규모(순자산) <input type="checkbox"/> 5억 이하 <input type="checkbox"/> 10억 이하 <input type="checkbox"/> 30억 이하 <input type="checkbox"/> 50억 이하 <input type="checkbox"/> 50억 초과
	4. 총 자산대비 금융자산의 비중 <input type="checkbox"/> 10%이하 <input type="checkbox"/> 20%이하 <input type="checkbox"/> 30%이하 <input type="checkbox"/> 50%이하 <input type="checkbox"/> 50%초과
투자경험	5. 투자경험이 있는 금융투자상품(복수선택가능) <input type="checkbox"/> 국채, 지방채, 보증채, MMF 등 <input type="checkbox"/> 금융채, 신용도가 높은 회사채, 채권형펀드, 원금보장형 ELS 등 <input type="checkbox"/> 신용도 중간 등급의 회사채, 원금의 일부만 보장되는 ELS, 혼합형 펀드 등 <input type="checkbox"/> 신용도가 낮은 회사채, 주식,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ELS, 시장수익률 수준의수익을 추구하는 주식형펀드 등 <input type="checkbox"/> ELW, 선물옵션, 시장수익률 이상의 수익을 추구하는 주식형펀드, 파생상품펀드, 주식 신용거래 등

본인은 노아파트너스(주)에 제공한 투자자정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합니다.

- 본인이 노아파트너스(주)에 제공한 투자정보는 본인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및 투자위험에 대한 본인의 성향 등의 정확한 정보임을 확인합니다.
- 본인은 상기 투자자정보확인서 상의 내용에 변동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투자자정보가 기존 정보와 동일한 경우)
- 본인의 투자자정보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노아파트너스(주)에 통지하여야 노아파트너스(주)가 본인에게 적합한 투자권유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받았습니다.
- 본 투자일임계약과 관련하여 노아파트너스(주)가 본인으로부터 취득한 모든 정보를 한국예탁결제원 등 관련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본인은 계약권유문서를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고객명 (인)	(주민(사업자)등록번호	
대리인 (인)	관계	대리인 주민등록번호	

※투자자정보확인 Part1. 기초정보(법인고객용)

대분류	질문
재산상황	<p>1. 자본금 규모 <input type="checkbox"/> 10억원 이하 <input type="checkbox"/> 30억원 이하 <input type="checkbox"/> 50억원 이하 <input type="checkbox"/> 1,00억원 이하 <input type="checkbox"/> 100억원 초과</p> <p>2. 향후 법인 수익에 대한 예상 <input type="checkbox"/> 현재 일정한 수익이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 <input type="checkbox"/> 현재 일정한 수익이 발생하고 있으나, 향후 감소하거나 불안정할 것으로 예상 <input type="checkbox"/> 현재 일정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음</p> <p>3. 총 자산규모(순자산) <input type="checkbox"/> 5억 이하 <input type="checkbox"/> 10억 이하 <input type="checkbox"/> 30억 이하 <input type="checkbox"/> 50억 이하 <input type="checkbox"/> 50억 초과</p>

	<p>4. 총 자산대비 금융자산의 비중 <input type="checkbox"/> 10%이하 <input type="checkbox"/> 20%이하 <input type="checkbox"/> 30%이하 <input type="checkbox"/> 50%이하 <input type="checkbox"/> 50%초과</p>
<p>투자경험</p>	<p>5. 투자경험이 있는 금융투자상품 (복수선택가능) <input type="checkbox"/> 국채, 지방채, 보증채, MMF 등 <input type="checkbox"/> 금융채, 신용도가 높은 회사채, 채권형펀드, 원금보장형 ELS 등 <input type="checkbox"/> 신용도 중간 등급의 회사채, 원금의 일부만 보장되는 ELS, 혼합형 펀드 등 <input type="checkbox"/> 신용도가 낮은 회사채, 주식,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ELS, 시장수익률 수준의 수익을 추구하는 주식형펀드 등 <input type="checkbox"/> ELW, 선물옵션, 시장수익률 이상의 수익을 추구하는 주식형펀드, 파생상품펀드, 주식 신용거래 등</p> <p>6. 금융투자상품 투자경험기간 <input type="checkbox"/> 전혀 없음 <input type="checkbox"/> 1년 미만 <input type="checkbox"/> 3년 미만 <input type="checkbox"/> 5년 미만 <input type="checkbox"/> 5년 이상</p> <p>7. 투자목적 <input type="checkbox"/> 여유자금의 단순 투자목적 <input type="checkbox"/> 은행 예금, 적금 등의 기대수익률을 상회하는 투자목적 <input type="checkbox"/> 적극적 자산 증대를 위한 투자목적</p>
<p>금융지식 수준/이해도</p>	<p>8. 금융지식 수준/이해도 <input type="checkbox"/>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해 본 경험이 없음 <input type="checkbox"/> 널리 알려진 금융투자상품 (주식, 채권 및 펀드 등)의 구조 및 위험을 일정 부분 이해하고 있음 <input type="checkbox"/> 널리 알려진 금융투자상품 (주식, 채권 및 펀드 등)의 구조 및 위험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음 <input type="checkbox"/> 파생상품을 포함한 대부분의 금융투자상품의 구조 및 위험을 이해하고 있음</p>
<p>감내할 수 있는 손실 수준</p>	<p>9. 감내할 수 있는 손실 수준 <input type="checkbox"/> 무슨 일이 있어도 투자 원금은 보전되어야 함 <input type="checkbox"/> 투자원금에서 최소한의 손실만을 감수할 수 있음 <input type="checkbox"/> 투자원금 중 일부의 손실을 감수할 수 있음 <input type="checkbox"/> 기대수익이 높다면 위험이 높아도 상관하지 않음</p>
<p>투자하는 자금의 투자 예정기간</p>	<p>10. 투자하는 자금의 투자 예정기간 <input type="checkbox"/> 단 기 : 1년 미만 <input type="checkbox"/> 단중기 : 1년 이상 ~ 2년 미만 <input type="checkbox"/> 중 기 : 2년 이상 ~ 3년 미만 <input type="checkbox"/> 중장기 : 3년 이상 ~ 5년 미만 <input type="checkbox"/> 장 기 : 5년 이상</p>

※ 투자자정보 확인

■본인은 귀사에 제공한 투자자정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합니다.

1. 귀사에 제공한 투자자정보는 본인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정확히 알려드린 것입니다.
2. 본 투자일임계약은 본인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의사결정을 하였으며, 원금손실 가능성 및 투자에 따른 손익 등 운용결과가 본인에게 귀속됨을 설명받았습니다.
3. 향후 12개월 동안에는 귀사가 본인의 투자자정보를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점을 설명받았습니다.
4. 본인의 투자자정보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귀사에 통지하여야 귀사가 본인에게 적합한 투자권유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받았습니다.
5. 세부자산배분유형간 구분기준, 차이점 및 예상 위험수준에 대하여 설명받았습니다.
6. 투자일임계약은 집합투자기구와 같이 분산투자규정이 없어 수익률 변동성이 집합투자기구에 비해 클 수 있음에 대하여 설명받았습니다.
7. 본 투자자정보 확인에 따라 분류된 투자자 유형 위험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투자일임 운용에 대하여 본인이 합리적인 개입을 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설명받았습니다.
8. 성과보수 수취요건 및 성과보수로 인해 발생 가능한 잠재 위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받았습니다.
9. 본인은 투자일임계약의 내용 및 위험, 구조와 성격, 수수료에 관한 사항,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받고 이해하였습니다.

년 월 일

고객명	(인)			주민(사업자)등록번호	
대리인	(인)	관계		대리인 주민등록번호	

[별지2]

[투자자정보확인서 Scoring 기준]

■ 문항별 배점

항 목		①	②	③	④	⑤
1번	월소득 현황	1점	2점	3점	4점	5점
2번	향후 자신의 수익원에 대한 예상	5점	3점	1점	-	-
3번	총 자산규모	1점	2점	3점	4점	5점
4번	총 자산대비 금융자산의 비중	5점	4점	3점	2점	1점
5번	투자경험이 있는 금융상품	1점	2점	3점	4점	5점
6번	금융투자상품 투자경험기간	1점	2점	3점	4점	5점
7번	투자목적	1점	3점	5점	-	-
8번	금융지식수준/이해도	1점	2점	3점	4점	-
9번	감내할 수 있는 손실 수준	1점	2점	3점	4점	-
10번	투자하는 자금의 투자예정기간	1점	2점	3점	4점	5점
11번	연령	5점	4점	3점	2점	1점

■ 점수 계산 방법

- 개인 : 1번부터 11번까지의 응답결과에 따른 점수를 합산(53점 만점)하여 이를 100점으로 환산
- 법인 : 1번부터 10번까지의 응답결과에 따른 점수를 합산(48점 만점)하여 이를 100점으로 환산

(예시) 개인 일임투자자의 경우 문항의 합산점수가 45점인 경우
 $45점 / 53점 * 100 = 84.9점$

■ 투자자유형 분류 (점수 결과에 따라 고객의 투자자 유형을 5단계로 분류)

투자자 유형	Scoring 결과	성 향
공격 투자형	80점 초과	시장 평균수익률을 훨씬 넘는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을 추구하며 이를 위해서 자산가치의 손실 위험성을 적극 인정/수용하는 투자유형
적극 투자형	60점 초과~80점 이하	투자원금의 보존보다는 위험을 감내하고서라도 높은 수준의 투자실현 수익을 추구한다. 투자자금의 상당부분을 주식, 주식형펀드 또는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유형
위험 중립형	40점 초과~60점 이하	투자의 위험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일정한 손실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투자유형
안정 추구형	20점 초과~40점 이하	투자원금의 손실 위험은 최소화하고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수즈의 안정적인 투자를 목표로 한다. 수익을 위해 단기적인 변동성을 수용할 수 있으며, 예/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위해 자산 중 일부를 변동성 높은 상품에 투자할 의향이 있는 투자유형
안정형	20점 미만	예금 또는 적금 수준의 수익률을 기대하며 투자원금에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투자유형

[별지3]

[적합성 판단기준]

구 분	초고위험 (Speculative Risk)	고위험 (High risk)	중위험 (IntermediateRisk)	저위험 (Low Risk)	초저위험 (Ultra Low Risk)
안 정 형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안정추구형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위험중립형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적극투자형	투자권유불가				
공격투자형					

- 위 투자자유형에도 불구하고, 투자예정기간이 단기인 경우 투자일임계약 체결 불가
- 전문투자자의 경우 운용계획, 투자예정기간 등을 우선 고려하여 투자자 유형 분류

[투자자유형과 세부자산배분유형]

구 분	공격투자형	적극투자형	위험중립형	안정추구형	안정형
자산배분 유형	Active형	Active형			
	Passive-Active형	Passive-Active형			

[별지4]

[금융투자상품별 투자위험도 분류기준]

구분	초고위험 (Speculative Risk)	고위험 (High risk)	중위험 (Intermediate Risk)	저위험 (LowRisk)	초저위험 (UltraLowRisk)
채권	투기등급 포함(BB 이하)		회사채 (BBB+~BBB-)	금융채 회사채 (A-이상)	국고채 통안채 지방채 보증채 특수채
주식	신용거래,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관리종목	그외 주식			
선물옵션	선물옵션				

[별지5]

[적합성 판단 기준(장외파생상품 이외의 파생상품등)]

▶ 회사는 장외파생상품 이외의 파생상품등에 대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별지3]의 적합성 판단 방식 이외에 아래 사항을 추가로 참고하여 투자권유 기준을 정하여야 합니다.

1. 만 65세 이상이고 파생상품등에 대한 투자경험이 1년 미만인 일반투자자인 개인에게는 파생상품등에 대한 투자권유를 할 수 없다.
2. 만 65세 이상이고 파생상품등에 대한 투자경험이 1년 이상 3년 미만이거나, 만 65세 미만이고 파생상품등에 대한 투자경험이 1년 미만인 일반투자자인 개인에게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파생상품등만 투자권유할 수 있다.
 - 가. 원금손실률이 20% 이내로 제한되는 파생결합증권
 - 나. 원금손실률이 20% 이내로 제한되는 파생상품 집합투자증권
3. 만 65세 이상이고 파생상품등에 대한 투자경험이 3년 이상이거나, 만 65세 미만이고 파생상품등에 대한 투자경험이 1년 이상인 일반투자자인 개인에게는 장외파생상품 이외의 모든 파생상품등에 대한 투자권유를 할 수 있다.

구분	파생상품등에 대한 투자 경험		
	1년 미만	1년 이상 ~ 3년 미만	3년 이상
만 65세 이상	- 파생상품등 권유불가	- 원금손실률이 20% 이내로 제한되는 파생결합증권 - 원금손실률이 20% 이내로 제한되는 파생상품 집합투자증권	- 장외파생상품 이외의 모든 파생상품등
만 65세 미만	- 원금손실률이 20% 이내로 제한되는 파생결합증권 - 원금손실률이 20% 이내로 제한되는 파생상품 집합투자증권	- 장외파생상품 이외의 모든 파생상품등	

[별지6]

[적합성 판단 기준(장외파생상품)]

▶ 회사는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별지3]의 적합성 판단 방식 이외에 아래 사항을 추가로 참고하여 투자권유 기준을 별도로 정하여야 합니다.

1. 만 65세 이상이고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경험이 1년 미만인 일반투자자인 개인에게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회피목적의 장외파생상품만 투자권유 할 수 있다.
 - 가. 금리스왑
 - 나. 옵션매수
2.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경험이 3년 미만인 주권 비상장법인 및 개인사업자,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경험이 1년 미만인 주권상장법인과 만 65세 미만이고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경험이 1년 미만이거나, 만 65세 이상이고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경험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일반투자자인 개인에게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회피목적의 장외파생상품만 투자권유 할 수 있다. 다만, 회사가 위험관리능력 및 장외파생상품 투자경험,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지식수준 등이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투자자(일반투자자인 개인은 제외)에 대하여는 가 목 부터 다 목 이외의 위험회피목적의 장외파생상품도 투자권유 할 수 있다.
 - 가. 금리.통화 스왑
 - 나. 옵션 매수.매도
 - 다. 선도거래

구분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 경험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개인	만 65세 이상	금리스왑 옵션매수	금리스왑, 통화스왑, 옵션매수, 옵션매도, 선도거래	기타 위험회피 목적의 모든 장외파생상품
	만 65세 미만	금리스왑, 통화스왑, 옵션매수, 옵션매도, 선도거래	기타 위험회피 목적의 모든 장외파생상품	
법인 및 개인 사업자	주권 비상장법인, 개인사업자 주권 상장법인	금리스왑, 통화스왑, 옵션매수, 옵션매도, 선도거래 금리스왑, 통화스왑, 옵션매수, 옵션매도, 선도거래	기타 위험회피 목적의 모든 장외파생상품	

* 장외파생상품의 경우 ‘주의’ , ‘경고’ , ‘위험’ 등 3단계로 분류하며, 각 위험도에 해당하는 금융 투자상품은 <별지4>를 참조할 것

* ‘경고’ 위험도에 적합한 투자자 중 위험관리능력, 장외파생상품 투자경험, 상품에 대한 지식 등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투자자는 기타 위험회피 목적의 모든 장외파생상품에 투자할 수 있음.